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23.5. 수정]

I

정당현수막 개요

□ 배경

-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한 현수막(정당 현수막)은 관련 규제*를 배제하도록 법률 개정

* 제3조 허가·신고, 제4조 금지·제한 규정 ** 개정 '22.6.10. / 시행 '22.12.11.

⇒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 안전 등을 위한 관리방안 필요

< 옥외광고물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법) 정당현수막은 제3조 허가·신고 및 제4조 금지·제한 규정적용 배제
- (시행령) 정당현수막에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표시하고,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 (조문) 옥외광고물법 제8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참고3]
- (정당법 제37조 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을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정당 현수막의 인정 원칙

1. 민주·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 (제3조·제4조 배제)

-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넓게 허용
-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 방식으로 최대한 설치 자유를 보장
- 통상적 정당활동 보호범위에 대한 정당법-옥외광고물법 간 해석 조율

2.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제한 적용 (제5조 적용)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한해서는 설치 제한

II 구체적 설치 및 관리 방안

□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의 의미

○ 설치 주체로서의 '정당'



- 정당법 제2조의 '정당'으로서, 선관위 등록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

※ ①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직위 복수 기재 권고), 성명 또는 ②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음

! '정당'이 아닌 사례 !

- ①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하는 경우
 - ※ 정당 명칭만 있거나, 정당 로고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경우는 가능
- ②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
- ③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 ※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포함함

※ 참고 : 정당 현수막이 아닌 사례

 <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국회의원) 표시기간: ○○.○○~○○.○○, 연락처(정당)○○○-○○○○, (설치업체)○○○-○○○○</p>	<p>○○ 협상 무효! ○○○당 표시기간: ○○.○○~○○.○○, 연락처(정당)○○○-○○○○, (설치업체)○○○-○○○○</p>
<p>① 정당 명칭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불가)</p>	<p>①-1 정당 명칭만 표시(가능)</p>
 <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국회의원) 표시기간: ○○.○○~○○.○○, 연락처(정당)○○○-○○○○, (설치업체)○○○-○○○○</p>	<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 ○○○ (○○시의원) 표시기간: ○○.○○~○○.○○, 연락처(정당)○○○-○○○○, (설치업체)○○○-○○○○</p>
<p>①-2 정당 로고에 정당 명칭이 포함(가능)</p>	<p>②-1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불가)</p>

○○ 대통령 서거 ○주기 ○○○ (○○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표시기간: ○○.○○~○○.○○, 연락처(정당)○○○-○○○○, (설치업체)○○○-○○○○	기름값 더 내립니다 ○○당 / ○○○○ 연합 표시기간: ○○.○○~○○.○○, 연락처(정당)○○○-○○○○, (설치업체)○○○-○○○○
②-1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불가)	③ 정당과 시민단체의 명칭을 함께 표시(불가)

○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설치

-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의 경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함
- 따라서,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정당 경비 이외의 비용이 투입된 경우 정당현수막으로 인정 불가

○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

- ①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 ②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관위에 질의

■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사례 ■

- ◇ 정당이 개인 치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 홍보·축하
- ◇ 정당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
- ◇ 정당이 주요정책 홍보, 자당 정책 홍보·축하, 의결 법률 홍보 등
- ※ 공직선거법 등 선관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선관위 방침에 따름

□ 정당현수막 표시의 적극적 요건 (시행령 제35조의2)

○ (표시방법) 정당 ①명칭, ②연락처, 설치업체 ③연락처, ④표시기간 모두 작성

-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
 - >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또는 글자당 세로 7cm, 가로 4cm) 이상으로 표시 권고
- 정당 연락처는 설치하고자 하는 정당 사무소의 연락처를 작성

설치 주체	중앙당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연락처(핸드폰도 가능)	중앙당 사무소	시도당 사무소	당원협의회 관계자

- 현수막 내용·설치 등 관련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작성
 - > 통상적 업무 시간 내에, 철거 및 이동 요청 등을 위한 연락(현수막에 기입된 연락처)이 되지 않는 경우 우선 제거 또는 이동 가능
 - ※ 다만, 연락 기록(통화 내역 등) 및 현수막 설치 사진 등 증거 우선 확보

○ (표시기간)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

- 표시기간 경과시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서 직접 자진 철거함이 원칙이며, 지자체에서도 즉시 자체 철거 가능

▮ 표시기간 위반 사례 ▮

- ◇ 15일을 초과하여 표기하는 경우(예 : 3.1~3.16 ⇒ 3.15까지 유효)
- ◇ 표시기간을 누락한 경우 ⇒ 무효
- ◇ 표시기간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경우(예 : 3.00~3.00 ⇒ 무효)
- ◇ 현수막에 천을 덧대서 날짜 연장 ⇒ 덧대서 표기한 기간은 무효
- ※ 표시기간을 수기 작성 후 수정한 경우에도 천을 덧댄 경우와 동일(무효)

< 정당 현수막 설치 예시 >



□ **정당현수막 표시의 소극적 요건 (법 제5조 위반 금지)**

◦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범죄행위 2. 음란·퇴폐적 내용 3. 청소년의 보호·선도 방해 4. 사행심 부추기는 내용
 -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내용)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도 범죄·미풍양속·청소년 보호 등 내용은 준수

○ (장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호기·도로표지·소방시설 등과 유사하거나 효용 저하 광고물 금지
-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금지

■ **설치장소 위반 사례** ■

- ◇ 교통 신호등, CCTV, 안전표지 등을 가리는 방식
- ◇ 사고 취약 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
- ◇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교차로 등)에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높이 2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 ◇ 가로등주 등에 대해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초과하여 설치

※ 정당현수막의 경우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배제되나, **제5조는 적용되며, 통상적 정당활동 여부는 선관위에서, 제5조 요건은 지자체에서 판단**

[참고] < 정당현수막 사고 발생 사진 >



키높이 이하 설치, 낙상 사고 발생 (인천)

현수막 과다 부착 가로등, 전도 사고 발생 (포항)

III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역할

□ 정 당

-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
 -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통상적 정당활동에 의한 정당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닌 불법 광고물
⇒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시방법과 기간에 맞게 설치**
 - 표시방법 및 기간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닌 불법 광고물
⇒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간(15일 이내) 경과시 자진 철거 원칙 (지자체도 자체 철거 가능)
※ 설치업체 대행시, 설치 및 철거 업무까지 의뢰하여 자진 철거
-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설치 금지**
 - 교통 신호기, 소화전, CCTV, 안전표지 등을 가리는 설치 금지
※ 신호기·소화전과 유사하거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 금지(옥외광고물법 §5)
 -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는 설치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교차로 등)에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높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설치 금지
 - 가로등주 등에 대해서는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이하로 설치
- **태풍 등 기상 상황 발생 또는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철거 요청 등에 협조 및 자진 철거
※ 별도 요청을 위한 시간이 없거나 상황이 긴박한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
- **SNS, 전자게시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지정게시대 우선 활용**

□ 지자체

○ 정당현수막 표시의 적극적 요건(시행령 제35조의2) 준수 여부 확인

- > 정당이 아닌 자가 설치 : 설치자(업체)에 시정요구 또는 지자체 자체 철거
- > 표시방법 위반시 : 정당(설치업체)에 시정요구 → 미이행시 강제처분
- > 표시기간 위반시 : 정당(설치업체)에 시정요구 또는 지자체 자체 철거
※ 4쪽 '표시기간 위반 사례' 참조

○ 정당현수막 표시의 소극적 요건(법 제5조) 준수 여부 확인

- > 제5조제2항 위반시 : 정당(설치업체)에 시정요구 → 미이행시 강제처분
- > 제5조제1항 위반시 : 정당(설치업체)에 시정요구 → 미이행시 강제처분
※ 5쪽 '설치장소 위반 사례' 참조

○ 지자체 강제처분 / 자체 철거 시 유의사항

- 안전사고 우려시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 철거 또는 이동 계침 요청
- 시정 요구할 시간이 없거나 긴박한 상황인 경우 지자체 직접 처리
※ 직접 처리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 및 통화기록 등 확보
- 표시기간이 남은 현수막을 철거한 경우에는 일시 보관 권고
- 철거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 > (강제처분의 법적 근거) 표시방법·기간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니며, 제3조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 되므로 제10조에 따라 제거 등 조치 가능
- > (과태료 부과 가능성) 동일 논리로, 제3조 위반에 따라 제20조에 근거하여 표시·설치자(정당/설치업체)에 부과

□ 설치업체 (정당에서 업체에 설치를 위탁하는 경우)

- (자격요건)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일 것
- (제작시) 표시방법·기간, 내용상 위법 등 준수 ※ 기간 경과시 자진 철거
- (설치시) 설치 수량, 장소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
- (협조사항) 지자체의 철거 또는 이동 계침 요청에 적극 협조
※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표시·설치시 해당 업체에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법 률	시 행 령
<p>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p> <p>1. ~ 7. (생 략)</p> <p>8. <u>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5조의2(적용 배제) <u>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p> <p>1. <u>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u></p> <p>가. <u>정당의 명칭</u></p> <p>나. <u>정당의 연락처</u></p> <p>다. <u>설치업체의 연락처</u></p> <p>라. <u>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u></p> <p>2. <u>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u></p>